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1일, 조인철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

11.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2. 25.)

상정,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12. 8.)

상정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12. 1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12. 10.)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조인철의원)

현행법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특정한 죄를 지은 자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렇게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거짓의 사실을 유폐하는 범죄가 포함되지 않음. 이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며 전파력이 높은 정보통신서비스상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업로드함으로써, 그 조회수 등에 기반한 불법적인 수익창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추가하려는 것임 (안 제75조의2).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 몰수는 징역형, 벌금형과 마찬가지로 형의 일종으로, 몰수 및 추징에 대해서는 「형법」 제48조 및 제49조에서 일반규정을 두고 있으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한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중대범죄’에 포함하고,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등에 대해서는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법에 의해서도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획득한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이 가능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임의적 몰수를 개별법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은 낮을 것으로 보임.

####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 현)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